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86호로 2026년 1월 19일 이순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련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6. 1. 20.~2026. 1. 2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현행 조례는 2015. 9. 24.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조례에서 인용한 「지진재해대책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각각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6. 1. 25.)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2016. 12. 23.)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조문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임.
 - 한편, 본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재까지 지진 발생 사례가 없어 실제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는 인용 상위법령을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 제명에 맞게 정비한 것임.
- 안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정의에 관한 인용 법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이를 통해 조문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